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9. 14 선고 2021가단106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24.

판 결 선 고 2021. 9. 1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강원도 정선군 C 전 6,612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29293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6. 7. 7. 접수 제8893호1)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단609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2. 4. 6. 접수 제326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. 7. 7. 접수 제8893호로 2006. 6. 27.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(이하 'D 명의 이전등기'라고 한다)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나. 원고는 2006. 11. 7.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단6098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,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06. 11. 9. 원고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. 이후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29293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7. 12. 28.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(이하 '선행 판결'이라 한다).

다. 피고는 2012. 4. 6. 이 사건 부동산을 D로부터 50,000,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. 3. 5.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갑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요지

① 소외 D에 대한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는 D 명의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② 피고는 가처분등기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,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① 청구 부분

원고의 ①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등기의무자(D)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,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나. 원고의 ② 청구 부분

다음으로 원고의 ②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,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고,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

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(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53768 판결), 원고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따로 소를 제기하여 가처분등기에 위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성준

1) 원고는 2021. 6. 28.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‘접수 제5873호’라고 기재하였으나, 이를 오히려 보아 직권 정정한다.